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일 자 리 경 제 과

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4. . .
발 의 자	이상호 의원 외 19인

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 안 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24. . .

발 의 자 : 이상호・강승수・김민성・김영길
김영태・김원섭・김재우・김정도
박교상・박세채・소진혁・신용하
이명희・이정희・이지연・장미경
장세구・정지원・추은희・허만근 의원(20인)

1. 제안이유

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안전 및 화재 예방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 지원 규정 신설(안 제48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

2) 「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6조의2

나. 부서검토: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, 예산재정과 비용추계 검토 결과(붙임)

라. 기　　타: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”을 “필요한 사항과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서민경제안정에 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(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 지원)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위험 점검,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,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 필요한 사항과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서민경제안정에 이바지함---.
<신 설>	제48조(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 지원)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위험 점검,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,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(이하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차장,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·개량·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, 점포 및 상인의 수,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업시설: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, 수리

2. 공동시설: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, 창고, 상인교육시설, 전기·가스·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·개량·보수 및 관광(테마)거리 등의 조성

3.~4. (생 략)

②~④ (생 략)

□ 「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

제6조의2(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 지원)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화재위험 점검,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

통시장 화재공제 가입,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일자리경제과

조 례 명	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

□ 검토 사항

○ 근거 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
- 「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6조의2

□ 주요 사항

제48조(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 지원) 신설

□ 검토 결과

전통시장 화재 안전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도입이 필요하나, 현재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기준 법제화가 되지 않았고 가격이 기존 누전차단기 대비 10배 이상 높으므로 소요 예산이 과다하여 장기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[별지 제1호서식]

(앞 쪽)

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아크차단기 교체 공사비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비용추계 기간 : 2025 ~ 2029

○ 아크차단기 교체공사비 5,844,000천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○시설비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5,844,000
	계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5,844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시 비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5,844,000
합 계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1,168,800	5,844,000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 한규용(480-2634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점포당 아크차단기 교체 비용 : 3,000천원

- 아크차단기 구입 : 2,100,000원(350,000원×6개)
- 설치비 : 900,000원

2. 전통시장 점포(1,948점포) 아크차단기 교체 비용 : 5,844,000천원